

● 제315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  
(의안번호 : 319)

2022. 12. 1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 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319

## I. 조례안 개요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7일
- 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### 2. 제안이유

- 본 개정조례(안)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\*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의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\* 법률(개정 '21.12.21., 시행 '22.6.22.), 시행령(개정 '22.6.14., 시행 '22.6.22.)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(기존 제5조)
- 나.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 5조~제5조의3 신설)
  - 1)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   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할 수 있도록 함
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 구성 기준 마련
- 2) 처우개선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1)
- 위원의 임기,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
- 3)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해임·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)
-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해임·해촉 사유 규정
- 4)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3)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, 회의 소집 사유 등을 규정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2. 7. 14. ~ 8. 3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### 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기존 조례의 “사회복지사 등 정책 자문위원회”를 대신해 “처우개선위원회”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#### 가. 개정안의 제안배경

-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, 열악한 조건과 근무환경은 이직을 촉진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 직접적인 대인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복지사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.<sup>1)</sup>
-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<sup>2)</sup>의 처우보장 및 지위향상은 2011년 제정되고, 2012년 시행된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고

1) 조상미, 정희수, & 한예선.(2020).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조건: 무엇이 변화되고 그 경험은 어떠한가?. *한국사회복지학*, 72(3), 85-107.

2)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2조(정의)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(이하 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

있으며, 같은 법 제 3조에서는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’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<sup>3)</sup>

- 이와 관련해 ‘21년 12월 동 법률 개정안<sup>4)</sup>이 통과되었으며,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‘처우개선위원회’를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에서도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처우개선위원회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추진 현황

-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 지방이양시점 이후부터 매년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, 2014년부터는 단계적 조정을 통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의 95%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왔음.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의 예산현황에 따라서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.<sup>5)</sup>

3) 김수정·김광병(2021).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분석. 사회복지법제연구 12(2).

4) 2021년 12월 개정, 2022년 .6월 시행

5) 현명이 외(2016)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 연구. 서울시복지재단.

- 또한 그간 정부의 복지정책이 효율성 중심의 수혜자 양적 확대에 집중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문제는 간과된 측면이 있음.<sup>6)</sup>
-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4년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.
- 대표적 성과로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금 수준 대비 95%까지 끌어올렸으며, 전 사회복지시설 시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**〈표〉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 추진경과**

연도	주요추진경과
2013년	·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용역 실시
2014년	·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을 통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
2016~2017년	·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 적용
2017년	· 근무여건 개선제도 시행 -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, 장기근속휴가, 대체인력지원, 단체연수비 지원 제도 도입
2019년	· 유급병가제도 도입
2020년	· 자녀돌봄 휴가제도 도입 · 국비시설 대상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 방안마련
2021년	· 건강검진 휴가제도 도입 · 국비시설, 서울시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완성

출처: 서울시 “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”

6) 이철선 외(2018).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연구. 한국보건사회연구원.

#### 다. 향후 과제 및 개정안의 필요성

-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 직급을 설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20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보수수준, 높은 업무강도, 클라이언트의 폭력 등에 대한 개선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그 외 연구결과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구조적인 과제, 임금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적 검토,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지적되고 있음.
-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“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”를 통해 보수수준, 종합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처우개선, 안전과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.
-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본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설치·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.

#### 라. 기타 착안 사항 : 경미한 자구 수정 필요

-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에 그 뒤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밀리면서 이를 모두 개정해야할 경우,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러나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5조의 1로 가지번호를 붙였으나 이는 법제처의 규정 방법과 상이하므로 가지번호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.<sup>7)</sup>
- 또한 제5조의 2의 경우 항의 내용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출된 안에서 항 번호를 삭제하는 등 조문의 전체적인 형식을 고려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.

### 3 종합의견

-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물론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돌봄 등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는 실질적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음.
- 본 개정안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는 것으로, 서울시에서도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에 실효성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제출된 개정안에서 기본적인 법령 개정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관련 업무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문 의 처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

7)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[예시] 기존의 제○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

제○조의2 및 제○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○조의2(○○) -----. 제○조의3(○○) -----
---